

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루이스해밀턴호텔(광안점) 우선수익권 담보대출 관련

연 대 보 증 계 약 서

-채무자-

주식회사 플 [REDACTED]

-채권자-

랑대부 주식회사

-연대보증인-

주식회사 [REDACTED] 종합건설

주식회사 라 [REDACTED]

2018년 11월 12일



법무법인 청담

LAW FIRM CHEONGDAM
KONG, MOON, YOON, HAN, BAEK & KIM

연대보증계약서

본 연대보증계약서[이하 "**본 계약(서)**"]는 2018년 11월 12일 아래의 당사자들 사이에서 체결되었다.

1. 채권자

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14길 13, 3층(논현동)에 등기된 본점을 두고 있는 **랑대부 주식회사**(법인등록번호: 110111-6325115)

2. 연대보증인

가.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[REDACTED] [REDACTED] [REDACTED]에 등기된 본점을 두고 있는 **주식회사 [REDACTED] 종합건설**(법인등록번호: 110111-[REDACTED]) (이하 "**연대보증인 A**")

나.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[REDACTED]에 등기된 본점을,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[REDACTED]에 등기된 지점을 두고 있는 **주식회사 라 [REDACTED]**(법인등록번호: 180111-[REDACTED]) (이하 "**연대보증인 B**")

(연대보증인 A와 연대보증인 B를 총칭하여 이하 "**연대보증인(들)**")

전 문

채권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181-205 426.0m²에 건축 중인 '루이스해밀턴 호텔(광안점)' 신축사업 (이하 "**본건 사업**")과 관련하여, 채무자 주식회사 플 [REDACTED] (법인등록번호: 180111-[REDACTED], 이하 "**채무자**")에 대해 원금 일십억 (₩1,000,000,000-)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하여 주기로 하였다 [위 대출에 관하여 2018년 11월 12일 체결된 대출약정(이후 차주와 대주 간에 추가로 체결되는 대출약정을 포함하여 이하 "**본건 대출약정**"이라 한다)에 따라 작성된 약정서를 이하 "**본건 대출약정서**"라 한다].

한편, 연대보증인들은 본건 대출약정상의 채무자인 주식회사 플 [REDACTED]이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원리금 채무 등 본건 대출약정에 따른 피담보채무 일체의 지

이상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본 계약서의 원본을 1부 작성한 후 본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였으며, 원본은 채권자가 보관하고 연대보증인들은 그 사본을 보관하기로 하였다.


연대보증인 A

주식회사 [] 종합건설

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[]

대표이사 장 []



(대표자/대리인) 서명: 장 [] 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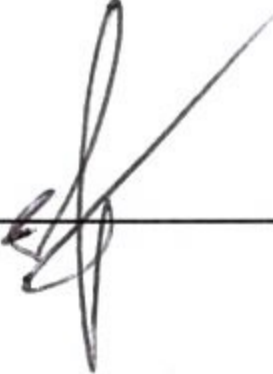
연대보증인 B

주식회사 라 []

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[]

대표이사 신 []



(대표자/대리인) 서명: 

채권자

랑대부 주식회사

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14길 13, 3층(논현동)

대표이사 정 상 원

